

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”를 “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”로,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디지털포용법」”으로, “관련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”을 “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”으로, “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”을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디지털포용법」”으로, “정보화 관련”을 “관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능정보사회 추진”을 각각 “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국내·외”를 “국내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2호 중 “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”을 “「디지털포용법」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육 시행”을 “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보안업무 규정」”을 “「보안업무규정」”으로, “재난 · 재해”를 “재난·재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보안업무 규정」”을 “「보안업무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”를 “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을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정보이용교육”을 “정보이용 및 디지털역량 교육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실시 할”을 “실시할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”를 “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1호 중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0조제2항”을 “「디지털 포용법」 제1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본문 중 “수강횟수”를 “수강 횟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를 <u>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</u> 및 「전자정부법」에 <u>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디지털포용법」</u>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① (생 략)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및 그 밖의 <u>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.</u>	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각 호 외의 용어의 뜻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, 「디지털포용법」 ----- ----- <u>관계</u> ----- -----.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<u>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구 <u>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	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<u>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</u> ----- ----- -----. ② -- <u>지능정보화 추진 및 디지털포용 증진</u> ----- ----- -----.
제6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구청장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	제6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--- --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

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책임관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0조(지능정보화 교류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·외의 기구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

2. ~ 5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2조(정보격차 해소의 추진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8조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 -----
-----.

제10조(지능정보화 교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국내외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정보격차 해소의 추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<u>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.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<u>교육 시행</u> 4. (생략) ③ (생략) 제13조(보안관리)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「<u>보안업무 규정</u>」에 따라 통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<u>재난·재해</u>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하는 자에게 「<u>보안업무 규정</u>」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제15조(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<u>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2. 「<u>디지털포용법</u>」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----- 3. ----- --- <u>교육의 시책 마련 및 시행</u>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13조(보안관리) ① ----- ----- 「<u>보안업무규정</u>」----- ----- ----- <u>재난·재해</u>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「<u>보안업무규정</u>」----- ----- -----. 제15조(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) - ----- <u>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향상</u> <u>을 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.
---	--
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</u>	3. ----- <u>정보이용 및 디지털역량 교육</u> -----
4. · 5. (생략)	4. · 5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)	제16조(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할</u> -----.
제17조(구민의 정보화교육) ① 구청장은 구민의 <u>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</u> 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	제17조(구민의 정보화교육) ① ----- <u>정보이용능력 및 디지털역량 강화</u> ----- -----.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수강료 등의 징수) ① (생략)	제18조(수강료 등의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. ~ 4. (생략) ③ (생략) 제20조(정보화교육의 활성화) ① · ② (생략)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하거나 개인별 연간 <u>수강횟수</u>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. 다만,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	1. 「디지털포용법」 제14조제3항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정보화교육의 활성화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수강 횟수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관 련 법 령

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9조(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)

삭제 <2025. 1. 21.>

제50조(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디지털포용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디지털포용”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·적·사회적·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디지털역량”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,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 용에 필요한 소양,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.
3. “디지털취약계층”이란 지능정보제품(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,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(디지털역량 함양 활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·장비의 설치
2.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·지원
3.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·조사·보급 및 연구
4.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
5.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4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5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
6.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

7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

2.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

3.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

4.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

제24조(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3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·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